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
제 권 판 결

사 건 2005카공 32 공시최고
신청인 최승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94-112
판결선고 2006. 1. 18.

주 문

아래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.

이 유

아래 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5. 10. 7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,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6. 1. 18. 14:00 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,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2006년 월 일

판사 노태현

증서의 중요한 취지

- 증서의 종류: 약속어음
- 번 호: 자가09336584
- 금 액: 금30,000,000원
- 발 행 일: 2005. 5. 18.
- 지 금 기 일: 2005. 10. 24.
- 지 금 장 소: 농협중앙회 함천군지부
- 발 행 인: 함천전통한과
- 최종소지인: 최 승 열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
제 권 판 결

사 건 2005카공 37 공시최고
신청인 변계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67-2
송달장소: 경남 거창군 거창읍
대동리 778 안의상회
판결선고 2006. 1. 18.

주 문

아래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.

이 유

아래 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5. 10. 11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,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6. 1. 18. 14:00 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,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6년 월 일

판사 노태현

증서의 중요한 취지

- 증서의 종류: 자기완수표
- 번 호: 바가65475753
- 금 액: 금5,860,000원
- 발 행 일: 2005. 9. 14.
- 발 행 인: 거창농협 창남지점